

##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경과조치 자격기준

	인지행동상담전문가
경과 조치 자격 기준	<p><b>1. 실시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7일</b></p> <p><b>2. 자격기준</b> 경과조치에 따른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1항, 2항, 3항,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.</p> <p>1항.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(1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(2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</p> <p>2항.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</p> <p>3항.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</p> <p>4항. 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</p>
세부 기준	<p>◎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준</p> <p>(1)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기반 치료를 연간 30회기 이상(개인세션 20회기 이상 포함) 수행한 경우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이 인정된다.</p> <p>(2)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빙한다.</p> <p>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</p> <p>①-1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수행 확인서</p> <p>②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</p> <p>③ 기타 인지행동치료기반 임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p>